

# 감사위원회 규정

## < 목 차 >

### 제 1 장 총 칙

### 제 2 장 구 성

### 제 3 장 운 영

### 부 칙

##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가온전선주식회사의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감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서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에 의한다.

### 제3조 (직무와 권한)

1.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감사위원회는 1항의 감사를 위해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3.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4.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시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5.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승인한다.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연속하는 매 3개 사업년도의 외부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단,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 하는 자를 외부감사인으로 변경 선임 또는 선정하거나, 이미 선정된 외부감사인이 사업연도 중 해산 등의 이유로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외부감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면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 기준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7.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8. 감사위원회는 상기 사항 이외에 법령 및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한다.

#### 제4조 (이사회 보고)

감사위원회가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 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 제 2 장 구 성

#### 제5조 (구성)

1.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해당 감사위원의 이사 임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그 임기가 최종 결산기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2. 감사위원회 위원은 연임될 수 있다.
3.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단,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은 관계법령이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는 아니된다.
4.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이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 수가 2항의 위원수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 (위원장)

1.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감사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인의 감사위원이 공동으로 감사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2.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장 운영

### 제7조 (소집권자)

1.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이 유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6조 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각 감사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알리고 감사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감사위원이 감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8조 (소집절차)

1. 감사위원회 소집은 회의일자를 정하고 12시간 전에 각 감사위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2.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1항의 절차 없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9조 (의사의 진행 및 결의방법)

1.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의사를 진행하고, 회의의 질서를 유지한다.
2. 감사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3.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감사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4. 감사위원회의 의안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감사위원의 의결권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0조 (부의사항)**

감사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감사에 관한 사항
  - ① 상법 제412조의 2에 의한 이사의 보고에 따른 조치
  - ②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따른 법률 제10조에 의한 외부감사인의 통보에 따른 조치
  - ③ 감사록 작성
  - ④ 자회사의 조사에 관한 사항
  - ⑤ 전문가의 자문에 관한 사항
3. 외부감사인 승인
4. 제출에 관한 사항
  - ①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및 제출에서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5. 기타 법령에 정하거나, 정관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이의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1조 (의사록)**

1. 감사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제정 시행한다.